

수 신 :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제 목 :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2년 11월 18일

대표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권기훈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용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류종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2. 11. 18.

발의의원 : 박종필, 하병문,
권기훈, 김재용,
이영애, 윤영애,
전경원, 김태우,
류종우, 김재우
의원(10명)

1. 개정 이유

근거 법령의 용어 정비와 공동상표 사용권, 표시방법 등을 시행규칙과 체계를 맞추고, 기타의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정의의 상위법률 수정(안 제2조)
- 나. 공동상표의 세부사항(안 제3조)
- 다. 명품인증 신청(안 제4조)
- 라. 기타의 법률 용어 정비(안 제9조)
- 마. 명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 수정(안 제11조)

3. 참고 사항

- 가. 조례안 : 붙임
- 나.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이하 “농축특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을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이하 “농축특산물”이라 한다)”이란”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규격”을 “규격, 사용”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신청)”을 “(명품인증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명품인증”을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명품인증”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보”를 “시 공보”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관련 본부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산유통과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u> ”(이하 “ <u>농축특산물</u> ”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등으로 「 <u>친환경농업육성법</u> 」 및 「 <u>농산물품질관리법</u> 」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말한다.	1. “ <u>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이하 “농축특산물”이라 한다)</u> ”이란 ----- ----- ----- 「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 」 및 「 <u>농수산물 품질관리법</u> 」----- -----.
2. “ <u>명품</u> ”이라 함은 제1호의 농축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 등으로 대구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이란 ----- ----- ----- -----.
제3조(공동상표) 시장은 명품에 대하여 시가 지정한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모양과 <u>규격</u> 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동상표) ----- ----- ----- <u>규격, 사용</u> -----.
제4조(<u>신청</u>) 농축특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의 생산자는 <u>명품인증</u> 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u>명품인증 신청</u>) ----- ----- ----- <u>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명품인증</u> -----.
제9조(명품지원계획 수립) ① (생	제9조(명품지원계획 수립) ① (현행

략)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명품지원 계획을 <u>시보</u>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명품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u>경제관련 본부장</u>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2. (생략) 3. <u>농식품과장(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u> 4. (생략) ④ (생략)	과 같음) ② ----- ----- <u>시 공보</u> ----- -----. 제11조(명품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경제국장</u>----- -----.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u>농산유통과장</u>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관 계 법 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9. 8. 27., 2020. 2. 18., 2020. 3. 24.>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기농수산물
 - 나. 무농약농산물
 -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 5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

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 2020. 2. 18., 2020. 12. 8.>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물류표준화”란 농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박피·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12. 6. 1.>

6. 삭제 <2012. 6. 1.>

7.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9.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14. 삭제 <2017. 11. 28.>
 -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6. 22.>